

인명표목통제를 위한 전거레코드작성기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Guideline of Authority Record for Heading Control of Personal Name

정 옥 경(Chung Ok-Kyung)**

<목 차>

- | | |
|---------------------------|---------------------------|
| I. 서론 | III. 한국편목규칙의 인명표목의 개선방안 |
| II. 한국편목규칙 표목부의 문제점 | 1. 기본표목의 선정 |
| 1. KCR2의 편찬배경 | 2. 표목에 표기되는 문자 |
| 2. ICCP와 KCR2의 표목부 비교분석 | 3. 동명이인의 구별방안 |
| 3. KCR2에 쓰인 표목부의 용어문제 | 4. 주제명일람표의 작성방안 |
| 4. KCR3에 있어서 표목부와 관련된 문제점 | IV. 인명표목통제를 위한 전거레코드 작성방안 |
| 5. 인명표목의 문제점 | V. 결 론 |

초 록

이 연구는 인명표목통제를 위한 전거레코드작성의 합리적인 기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ICCP의 제원칙의 성명, 한국편목규칙의 표목부와 한국문헌목록정보에 있는 인명표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제점을 조사하여 인명표목에 대한 레코드작성지침을 제시하였다. 표목통제를 위한 레코드작성지침은 별도로 편찬하지 않고, 편목규칙의 표목부 규칙에 통합하여 편찬하는 것이 더욱 유용하고 합리적이다. 또한 효율적인 검색을 위하여 동명이인의 구별방안과 주제명일람표 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한국편목규칙, 표목, 표목통제, 인명표목, 전거레코드, 기본표목, 동명이인, 주제명일람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rational guidelines of authority record for personal name heading control. It analyzes the Statement of Principles of ICCP, the headings of Korean Cataloging Rules and personal name heading of KORMARC on Disc. It also investigates the problems and suggests the possible improvements for headings of personal name. The rules for heading control retains the frame from headings of cataloging rules. The guidelines for heading control of personal name will be integrated in the rules for headings. To efficient retrieval, It suggests distinction of different persons of the same name and subject List.

Key Words : Korean Cataloging Rules, Heading, Heading Control, Personal Name Heading, Authority Records,

* 이 연구는 시립인천전문대학 교내 연구지원비로 이루어진 것임.

** 시립인천전문대학 문헌정보과 교수(okjung@icc.ac.kr)

· 접수일 : 2001. 11. 15 · 최초심사일 : 2001. 11. 30 · 최종심사일 : 2001. 12. 17

I. 서 론

현대의 편목규칙은 서지레코드의 접근점으로 사용되는 표목의 선정과 그 형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표목부와 이 접근점 하에서 자료의 서지적 실체를 식별하기 위한 서지기술사항을 규정하는 기술부로 대별된다. 그러나 한국목록규칙 제3판은 다양한 정보자료 중에서 단행본에 대한 기술규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표목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불완전한 편목규칙이다. 또한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 Formt)에 적용하기 위해서 편찬된 한국목록자동화목록법 기술규칙에서도 서지기술사항에 대한 기술규칙만을 규정하고 표목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KORMARC 기술규칙에 준해서 입력된 「한국문헌목록정보」를 보면 표목 특히 인명표목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1999년에 KS X 6006-4로 지정된 전거통제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 Format for Authority Data)도 각 필드에 해당하는 표목선정 및 그 형식에 관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서관마다 나름대로의 표목규정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준화된 편목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전거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서지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서지데이터베이스의 통합시 큰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거레코드의 작성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표준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편목규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KCR3의 표목부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규칙과 포맷의 표준화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일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KORMARC와 KCR의 각각의 제정이 아닌 통합된 규칙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환경에 부합되는 인명표목통제를 위한 전거레코드 작성에 기준이 되는 표목부에 대한 일련의 합리적인 규칙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KCR의 편찬배경, ICCP와 KCR2의 표목부와의 관계, KCR2에 쓰인 표목부의 용어체계문제 및 한국문헌목록정보에 있어서 인명표목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과 표목통제를 위한 전거레코드의 작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한국편목규칙 표목부의 문제점

1. KCR2의 편찬배경

1961년 10월에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목록원칙회의(ICCP)는 모든 국가에 있어서의 표목과 기입어의 선택과 형식, 저자·서명의 자모순목록에 있어서 기입과 형식을 결정하는 기본원칙을 표준화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채택된 ‘편목원칙에 관한 성명(Statment of Principle)’은 저자명 기본저록원칙을 위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한국에 있어서 유일한 목록 규칙이었던 박봉석 편 ‘동서편목규칙’²⁾은 서명 기본저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국제적인 원칙에 준하는 새로운 편목규칙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2년도에 한국도서관협회의 목록분과위원회는 ICCP에서 채택된 편목원칙에 따르기로 하고 그 취지에 맞는 편목규칙을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결의하였다.

- (1) 표목은 한글로만 표기한다.
- (2) 외국인명, 서명 등은 한글 번자로 표기한다.
- (3) 저자명표목에 있어서 성과 이름 사이는 콤마를 사용한다.³⁾

이러한 원칙에 따라 1962년말에 ‘표목의 선정’과 ‘표목의 형식’에 대한 규칙 (94개 조항)을 제정하여 ‘한국목록규칙(안)’⁴⁾을 프린트판으로 발행하고, 이어서 1963년도에 ‘기술목록규칙’의 부문을 제정 완료하여 1964년에 초판을 발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2년 후인 1966년에는 수정판을 발행하였다. 이 수정판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이 목록규칙의 기본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 (2) 규칙조문의 중복을 가능한 한 피하고 단일화한다.
- (3) 조문번호를 일련번호로 함으로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한다.
- (4) 가능한 한 많은 예를 삽입함으로써 조문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
- (5) 목록의 번잡함을 덜기 위하여 저자표시에서는 저, 또는 편, 역 등의 사이에는 콤마를 생략한다.
- (6) 부록으로 표기법과 약어표, 그리고 카드목록의 실례를 수록하여 사용에 편하도록 한다.⁵⁾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개정된 수정판은 총 142개조로 크게 3부문으로 대별되는데 제1부문은 ‘기본기입의 선정’, 제2부문은 ‘표목의 형식’, 제3부문은 ‘기술목록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규칙은 전체142개 조항 중에서 표목에 관한 조항이 79개 조항이다.

2) 박봉석 編, 『東書編目規則』. 서울: 國立圖書館, 1948.

3)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 修訂版.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66. p. vi.

4) 韓國圖書館協會 技術委員會 編, 『韓國目錄規則(案)』. 프린트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62.

5) 한국도서관협회 편, 『韓國目錄規則』. 修訂版.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66. p. iii-iv.

2. ICCP와 KCR2의 표목부 비교분석

1966년에 발행된 '한국목록규칙' 수정판의 서문에 보면, "1961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국제편목원칙회의에서 결정된 편목원칙을 그대로 따르기로 결의하였으나 다만 ICCP의 제원칙에 관한 성명 중에서 11.14항6)과 11.2항7)은 예외로 하기로 하였다.⁸⁾ 그러므로 ICCP에서 채택된 편목원칙이 한국편목규칙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대비 분석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ICCP와 KCR2의 기본표목의 선정

ICP			KCR2		
조항	내용	기본표목	조항	내용	기본표목
8	단일저자의 저작	저자명	1a	개인 및 단체의 저작	저자명
9	단체저작의 저작	단체명			국명 또는 주명
9.2	헌법, 법률과 조약	표제명	64	헌법	헌명은 부표목
9.3	종속단체	종속단체명	66	법령	국명, 법령집을 부표목
			68	조약	국명, 조약집을 부표목
			74	부설 조직체	단체명, 부설조직체명을 부표목
			75	부, 과, 지부 등	단체명, 부, 과, 지부명을 부표목
10	복수저자의 저작		3	공저서:	
10.1	· 주저자 표시된 경우	주저자명	3a	2-3인의 공저	첫 저자명
10.2	· 주저자가 없는 경우	표제지에 처음 기재된	3b	공저자가 4인 이상의 경우	서명
	· 저자의 수가 2-3명	저자명	4b	합저서	
	· 저자의 수가 4인이상	저자명	4b(1)	둘 이상의 합저서	주저자
		서명	4b(2)	둘 이상의 합저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3인	
				4인이상	첫 저자명
				합 집	서명
10.3	전집		5	종합서명이 있는 경우	
10.31	종합서명이 있는 경우	전집의 서명	5b1	편찬자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경우	서명
10.32	종합서명이 없는 경우	첫 번째 저작의 저작	5c	종합서명이 없는 경우	편찬자명
		명 또는 서명	5c(1)		표제지에 최초로 기재
10.33	편집자명이 표제에 원등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편집자명	5c(2)	여러 저자에 의하여 저술된 저작을 합	된 저자명
10.4	한 저작의 연속적인 부분이 다른 저작들의 저작	첫 부분의 저작		개모아 출판한 경우	합집내의 첫 저작물의
				표제지에 저자의 표시가 없는 경우	저자 또는 서명
				축지간행물	서명
			6	총서, 전집, 강좌	편자, 출판자명
			6d	편지나 출판자명으로 더 잘 알려진 총	
			6d(1)	서	단체명
			6d(2)	총서명이 없이 학회, 공공기관 또는 기	단체명
				타 단체에서 발행한 총서	

- 6) 11.14 (연속간행물과 정기간행물을 포함해서) 주로 또는 관례적으로 저자명보다는 서명으로 알려진 저작은 서명을 기본표목으로 한다.
- 7) 서명 하에 기입된 저작에 대한 통일표목은 원서명이거나 혹은 그 저작의 여러 판본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된 서명을 기본표목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만 그 저작이 한 관습적인 서명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면, 그 통일서명은 관습적인 서명이 된다.
- 8) 한국도서관협회 편, 『韓國目錄規則』, 修訂版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66. p. v.

ICP			KCR2		
조항	내용	기본표목	조항	내용	기본표목
11.11	한저자의 저작인지 확인되지 저많은 작	서명	1C	여러 기고자에 의한 저작으로 권호수를	서명
11.12	4인이상의 저작으로서 주저자가 없는 경	서명	3b	이어 계속 간행되는 경우	서명
11.13	서로 다른 저자의 독립적인 저작이나 혹	서명	4b(2)	4인이상의 공저자인 경우	서명
11.14	은 저작의 부분의 진집이	서명		주저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확인할 수 없	서명
	한 종합서명하에 발행한 경우	서명		는 합저서의 경우; 저자가 3인 이하이고	
	관례적으로 저자명 보다 서명으로 더 잘	서명	5b(1)	그 서명이 각 저자의 누구에게나 적용할	
	알려진 경우(연속간행물 포함해서)	서명		수 없을 경우	
			6a	종합서명을 가지고 있는 진집, 년감, 인명	서명
			6b(1)	록, 전화번호부 등 연차적으로 간행되는	
				경우	
			6a	잡지	최신지명
			6b(1)	발행이 정지된 잡지	구지명 또는 장기간 통
			6b(3)	총서, 진집, 강좌	용된 지명
			6d38	무저자명 고전	서명
					관용된 통일서명
11.2	성명하에 기입된 저작에 대한 통일표목	여러 판본에서 가장			
	의 경우	빈번히 사용된 서명,			
		원서명			
11.3	여러 권호나 연속적인 부분이 서로 다른	첫부분의 서명			
	서명을 가진 경우				
11.4	한 연속간행물이 다른 서명하에 연속으	바로 직전이나 직후의			
	로 발행되는 경우	서명			
		가장 빈번히 사용된			
		형식의 통일표목			
11.5	여러 국가간의 국제조약	조약명	68	여러 국가간의 국제조약	조약명
12	개인의 인명에 대한 표목어	각국에 통용되는 관례			
		또는 저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ICCP의 편목원칙 제12조항 '개인의 인명에 대한 표목어'를 제외
 외한 대부분을 AACR의 경우 이상으로 KCR2에서도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KCR2에 쓰인 표목부의 용어문제

KCR2에 있어서 표목부의 규정내용은 소략한 점이 있으나 그 체계와 순서는 합리적인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표목부를 2대구분한 것은 좋았으나, 제1장의 제목을 “기본기입의 선정,”
 제2장의 제목을 “표목형식”이라고 한 것은 그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 특히 “기입”이라는
 용어는 일본어에서 전용된 것으로 우리 나라의 어의에 맞지 않고, 또한 영어로는 entry에 해

당하는 것으로 이에 적절하지 못하므로, “기입”이라는 용어 대신에 “표목”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기본표목의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제2장에서는 표목의 형식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본표목이던 부출표목이던 상관없이 여러 가지의 표목과 그 형식 중에서 보다 확실하고 합리적인 표목을 선정하기 위한 규정들이다. 이를 다시 요약해서 말하면 모든 표목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2장에서는 “표목의 통제”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KCR도 AACR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1편은 “기술부”로 하고, 제2편은 “표목부”로 하되, 그 제1장은 “기본표목의 선정”, 제2장은 “표목의 통제”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KCR3에 있어서 표목부와 관련된 문제점

1966년에 발행된 [한국편목규칙]수정판까지는 빈약하나마 ‘기본표목의 선정’과 ‘표목의 형식’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⁹⁾ 그러나 KCR3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단행본에 대한 기술부만을 수록하고 말미에 짤막한 ‘표목올림지시’편을 붙여서 발행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KCR3에는 표목의 선정과 그 형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 서문에서 보면 “우선 급한 대로 완성된 기술편과 표목올림지시편을 첫권으로 펴내고, 나머지 편들은 그의 완성을 기다려 나중에 권을 달리해서 펴낼 작정이다”¹⁰⁾라고 했는데, 그 후 8년 후인 1990년에 이른바 3.1판이라고 하여 새로 발행하면서도 여기에서도 표목에 대한 규정은 수록하지 않았으며, 18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도 그 서문에 보면 “[표목]에 대한 규정은 가급적 ISBD와 AACR2에 준거하느라고 애썼다”¹¹⁾고 하고, “표목올림지시에 쓰이는 문자와 형식은 표목편에서 규정한 표목의 그것과 똑같이 취한다”¹²⁾고했기 때문에 KCR3에는 [표목]에 대한 규정도 있는 것처럼 독자들로 하여금 혼돈을 야기시키게 하였다.

한편 기술부에 대한 규칙 중의 ‘줄 머리자리 잡는법’에서 ‘첫줄 내 쓰기식의 기재형식’을 예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현장에서는 KCR3은 첫줄 내 쓰기식의 기재형식이 원칙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서명이 기본표목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표목올림지시사항에서 서명이 첫째의 표목으로 지시되어 있고, 둘째, “서명기입으로

9) 韓國圖書館協會, 『韓國目錄規則』. 修正版. *op. cit.*, pp.1-f0.

10) *Loc cit.*

11) 『韓國目錄規則』3版: 記述·標目올림指示篇.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3. p.7.

12) *Ibid.* p.90.

서 올려지는 서명표목의 문자와 형식이 띄어쓰기 외에는 기술부의 첫머리 서명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할 경우에는 서지기술유니트카드를 그냥 서명기입으로 삼고, 서명기입을 위한 서명표목의 올림지시는 생략한다”¹³⁾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명이 기본표목으로 지시된 것이다. 따라서 KCR3에는 표목의 선택이나 그 형식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는데도 결과적으로는 모든 저록을 서명기본표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5. 인명표목의 문제점

접근점으로 선정될 때 가장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인명표목의 문제점을 「한국문헌목록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KORMARC 기술규칙과 KCR3에는 표목부에 대한 규칙이 없는데 [한국문헌목록정보]의 1001에 기본표목의 자리가 지정되어 있고, 7001에는 저자부출표목의 자리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문헌목록정보]¹⁴⁾의 상세정보를 보면 기본표목의 선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하나의 예를 들면, 나관중이 저작한 삼국지(연의)를 이문열이 평역하여 [삼국지]라는 서명 하에 전질 10권으로 민음사에서 세 번에 걸쳐(1988, 1990, 1994) 발행된바 있는데, 이들 중 어떤 권질은 ‘나관중’을 기본표목으로 선정하고, 어떤 권질은 평역자인 ‘이문열’을 기본표목으로 선정하고 있다.¹⁵⁾ 성과 이름 사이에 콤마를 찍는 경우도 있고, 찍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1001 \$a이문열%
 24510\$a三國志 / \$d이문열 평역.\$n제1권-제10권%
 260 \$a서울 : \$b民音社, \$c1988%

1001 \$a이문열%
 24510\$a(李文烈 評譯)三國志 / \$d이문열 지음. \$n제1권:
 \$p桃園에 피는 義%
 260 \$a서울 : \$b民音社, \$c1990%

13) Loc cit.

14)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목록정보』. 1997 가을판.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7.

15)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목록정보 = Korean MARC on Disc』. 1997 가을판.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97. ‘이문열’표목 하의 三國志참조

1001 \$a나, 관중%
24510\$a三國志 / \$d나, 관중 지음 ; \$e李文烈 평역. \$n
제1권: \$p도원(桃園)에 피는 의(義)%
260 \$a서울 : \$b民音社, \$c1994%

따라서 [한국문헌목록정보]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을 선정하고, 각 표목의 형식을 결정했는지 알 수가 없다. 여하간 이러한 현상은 현재 KCR3이나 KORMARC기술규칙에 표목부에 대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목록작성자 임의로 원칙없이 편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KCR3의 표목부에 대한 규칙의 제정이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 현재 KCR3에는 표목부에 대한 규칙이 없지만 KCR2에서는 우리 나라나 기타 동양인명의 경우도 한글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성과 이름 사이에 콤마를 찍고 있는데, 이것은 서양의 관행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ICCP의 제12조항에 의하면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관례에 의해서 결정한다’ 고 되어 있으며, AACR2R의 규칙 22.3B4에서는 ‘22.3B1-22.3B3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모든 인명의 경우에는 개인의 거주 및 활동국의 참고정보원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형식을 선정한다’ 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인명표기법에 대해서는 이미 1971년도에 한국도서관협회에서 IFLA에 통보한¹⁶⁾ 바와 같이 성명을 한글로 표기하던 혹은 영어나 기타의 외국어로 표기하던 본래 성 다음에 이름을 기술하되 성과 이름 사이에 콤마를 찍지 않는 것이 전통적인 관행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셋째로 한국인의 인명을 한글로만 표기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우리나라의 성씨는 다음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음이성이 상당히 많다.

16) 한국도서관협회 목록분과위원회, “韓國人名의 構造와 그 記入法에 대하여: IFLA매뉴얼 人名記入法의 韓國項目을 위한 우리의 보고”, 《도협월보》 제12권, 제8호(1971). pp. 8-10.

<표 2> 한국의 同音異姓표¹⁷⁾

01 강: 姜, 康, 强, 疆, 剛	20 석: 石, 昔, 碩	39 이: 李, 伊
02 경: 慶, 景	21 선: 宣, 先	40 임: 任, 林
03 구: 具, 丘, 邱	22 성: 成, 星	41 장: 張, 蔣, 章, 莊
04 국: 鞠, 國, 菊	23 소: 蘇, 邵	42 전: 田, 全, 錢
05 기: 寄, 箕	24 순: 荀, 順, 舜, 淳	43 정: 鄭, 丁, 程
06 나: 羅, 奈	25 승: 承, 昇	44 조: 趙, 曹
07 노: 盧, 魯, 路	26 시: 施, 柴	45 존: 鍾, 宗
08 단: 段, 單, 端	27 신: 申, 辛, 慎	46 주: 朱, 周, 奏
09 도: 都, 道, 陶	28 양: 梁, 楊, 襄	47 지: 池, 智
10 돈: 敦, 頓	29 여: 呂, 汝, 余	48 진: 陳, 晉, 眞
11 마: 馬, 麻	30 연: 延, 連, 燕	49 창: 昌, 倉
12 모: 牟, 毛	31 염: 廉, 閻, 濂	50 채: 蔡, 菜
13 반: 潘, 班	32 예: 芮, 藝	51 초: 楚, 肖
14 방: 方, 房, 房, 旁, 邦	33 웅: 邕, 雍	52 추: 秋, 鄒
15 범: 范, 凡	34 우: 禹, 于	53 편: 片, 扁
16 변: 邊, 采	35 원: 元, 袁	54 포: 包, 鮑
17 빈: 賓, 彬	36 위: 魏, 韋	55 하: 河, 夏
18 사: 史, 舍, 謝	37 유: 柳, 劉, 兪, 庾	56 한: 韓, 漢
19 서: 徐, 西	38 은: 殷, 恩	57 호: 扈, 胡

이상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자로는 전혀 다른 성인데 한글표기로는 동일한 성이 되는 경우가 57개 성이나 된다. 따라서 한글로만 표기된 인명은 우선 성의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인명표목에 있어서는 성명의 한글표기 다음에는 그에 해당하는 한자 인명을 기입해서 이에 따라 다시 체계적으로 배열해야만 각각의 저자명이 개별화 될 수 있다.

넷째로 이상의 예와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이지만, 李를 “이”와 “리”로, 柳를 “유”와 “류”로, 羅를 “나”와 “라”로 하는 등 사람에 따라 표기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행이 최근에 李는 “이”로, 柳는 “유”로, 羅는 “나”로 표기하도록 호적법 시행규칙¹⁸⁾에 규정하였으므로 이 규정에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미 “리”와 “류”, “라”로 표기된 표목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이상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한자에는 동음자가 많기 때문에 한국인의 인명은

17) 『韓國姓氏大觀』. 崔德教, 李勝羽 編著. 서울: 創造社, 1971. pp. 2-9.

18) 朝鮮日報 1995년 12월 21일자. 「호적에 라-리류씨 표기 불가」 앞으로 리, 류, 라씨 성을 가진 사람들은 호적부에 기재할 때 한글 맞춤법에 따라 이, 유, 나씨로 통일표기해야 한다.

동음이명도 상당히 많다.

同音異名

김영호: 金永虎, 金永浩, 金永鎬, 金英昊, 金英浩, 金英鎬
金泳鎬, 金榮昊, 金榮湖, 金榮豪, 金榮鎬, 金瑩昊

그러므로 한국인의 인명에 대한 한글표기만으로는 각각의 인명이 개별화될 수가 없고, 따라서 각 저작자의 문헌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한 자리에 정렬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분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검색이 불편하고 또한 그 효율성이 저하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명표목은 한글로 표기한 다음 한자의 인명을 기입해서 한자의 일정한 순서(컴퓨터에 입력된 한자코드 순)에 따라 배열해야만 각각의 인명이 개별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특히 김씨, 이씨, 박씨, 윤씨, 정씨 등 이른바 오대성씨의 경우에는 동명이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외국인의 경우도 AACR2R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편목규칙에서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명 다음에 그의 생몰년을 기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이용자들은 현대의 저자들에 대하여 생몰년에 의해서 동명이인을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다.

KCR2 44에 보면 '동성동명의 저자는 생몰년으로 구별한다. 만일 생몰년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생몰년으로 구별한다. 만일 생몰년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생몰년만으로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歷朝名(국적), 직업, 세계(世系) 등을 원괄호로 묶어 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례는 다음과 같다.

예: 이, 순, ? - 755(新羅)
이, 순, ? - 1507(朝鮮)
經國濟世內編註解, 李純 著.

스즈키, 신타로오, 1895 - (文學者)

스즈키, 신타로오, 895 - (畫家)

이와 같은 방법은 서구식 용법에 따른 것이다. 목록을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동명이인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만 이용자에게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이용자들은 저작자들의 생몰년이나 저자의 직업을 미리 알고 있을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용자들의 식별요소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저자의 저작들이 한 곳에 집결되지 않고 분산되어 검색 및 식별능력이 저하 될 수 밖에 없다. 이용자 편의의 목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III. 한국편목규칙의 인명표목의 개선방안

1. 기본표목의 선정

현대의 정보화환경은 목록분야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으며, 앞으로는 더욱 그 변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AACR2R과 USMARC에서도 온라인 환경에 합리적으로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현재까지 온라인 목록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신중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목록의 표목부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Wajenberg는 “온라인목록을 위한 규칙은 결국 표목의 선정과 그 형식에 대한 규칙에서는 대단히 많은 급진적인 변화를 강요할 것”¹⁹⁾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표목의 선정’이란 기본표목의 선정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그 형식’이란 기본표목뿐만 아니라 모든 부출표목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Tucker는 미래의 온라인환경과 관련하여 AACR2R에 있어서의 “표목의 형식을 위한 규칙에 있어서는 거의 변경이 없을 것이고, 기본표목의 선택을 위한 규칙에서는 몇 가지의 조정이 있을 것”²⁰⁾이라고 예견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라인목록에 있어서의 ‘기본표목의 선정’과 ‘표목의 형식’을 위한 규칙에 있어서의 미래의 변화에 대한 이들의 견해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표목 또는 접근점의 선택과 그 형식에 있어서 변경해야 할 이유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견해를 다시 분석해 보면, 우선 ‘기본표목의 선정’에 대한 규칙에 있어서 Wajenberg는 ‘급진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Tucker는 ‘몇 가지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는데, 이 ‘기본표목의 선정원칙’은 1961년에 ICCP에서 채택한 ‘편목원칙에 대한 성명’의 주된 내용으로서 이 원칙이 1967년에 발행된 AACR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그 후 AACR2와 AACR2R에서도 변함없이 그대로 준수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Nancy B. Olson이 편찬한 *Cataloging Internet Resources: A Manual and Practical Guide*의 제4장Bibliographic Access를 보면 “기본표목[MARC 100, 110, 111, 130 또는 1xx가 없을 경우 245]은 AACR2R 제21장의 규칙에 따라 선정된다. Computer file의 기본표목은 없다”고 했으며, “부출표목[MARC 7xx]도 AACR2R에 따라 작성된다”²¹⁾고 하였듯이 필자의 견해도 온라인목록에서 표

19) Arnold S. Wajenberg, "The Future of Cataloging Standards", *Illinois Libraries*, Vol. 72, No. 6(1990). p. 495.

20) Ben R. Tucker, "Interpretation of 1988 Revision". In: *The Origins, Content, and Future of AACR2*. Revised ed. by Recharad P. Smiraglia. Chicago : ALA, 1992. p. 41.

목부에 관련된 규칙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Tucker가 말한 바와 같이 '기본표목의 선정을 위한 규칙에서 몇 가지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면, 종전에 네 사람 이상의 공저서에 있어서 주저자가 없을 경우는 서명을 기본표목으로 선정하도록 했는데, 온라인 환경에서는 혹은 이 공저자수의 범위를 더 늘인다거나, 혹은 모든 공저서의 경우도 그 표제지에 첫 번째로 기재된 저자명을 기본표목으로 한다거나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기본표목은 그것이 도서기호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분류번호와 함께 자료의 서가배열의 기준이 되므로 만약 이 규정을 변경한다면 기존의 서가배열체계와 앞으로 배열체계가 상당히 달라지게 된다. 한편 '동일저자의 동일한 주제, 동일한 내용의 저작을 동일한 장소에 집결시킨다'고 하는 분류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서가배열에 있어서도 대단히 큰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실제의 도서관이 없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검색에 있어서도 검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한편 이러한 서가배열에 있어서의 대 혼란을 감수하면서도라도 종래의 규칙 또는 관행을 탈피해서 새로운 규칙으로 변환해야만 할 충분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네 사람 이상의 공저서나 합저서에 대한 종래의 기본표목의 선정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2. 표목에 표기되는 문자

ICCP의 편목원칙의 제12항에 따르면, "한 개인저자의 인명이 여러개의 낱말로 이루어졌으면, 표목어의 선택은 가능한 한 그 저자가 속해 있는 나라에서 통용되는 관례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혹은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면, 그 저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례에 의해서 결정한다."²²⁾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의 알파벳 목록저록에 있어서 첫 번째로 선택되는 개인의 인명에 대한 부분은,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어서는, 여러가지의 국가적 언어적 관습에 따라 좌우되고, 또한 복잡성과 경칭이 앞에 붙는 성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많은 다양성이 있다. 그러한 인명에 대한 표목어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그 저자가 속하는 국가의 관행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²³⁾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요건은 대체로

21) <http://www.oclc.org/oclc/man/9256cat/chap4.htm>

Cataloging Internet Resources: a Manual and Practical Guide. Nancy B. Olson, Editor. 2nd ed. 1998.

22) IFLA, *Statement of Principles: adop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ing Principles (Paris, Oct., 1961)*. Annotated ed. London : IFLA Committee on Cataloguing, 1971. p. xviii.

23) Ibid. p. 119

파리 규정 이후에 일반적으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AACR에서는 영어형식으로 확립된 인명을 가진 사람은 물론, 로마 알파벳문자가 아닌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명의 경우도 모두 로마자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AACR2R에서는 “그의 인명이 비로마자자로 쓰여진 이름(given name)을 앞세워 기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영어로 쓰여진 참고자료에 잘 정립된 인명의 형식을 선택한다”²⁴⁾고 규정하고, AACR2에서는 “만약 성을 앞세워 기입된 사람의 인명이 비로마자자로 쓰여졌으면, 그 편목기관에서 채택한 언어에 대한 표에 따라서 그 인명을 로마자화 한다”²⁵⁾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저작자체가 어떤 문자나 언어로 쓰여졌던 그 저자명이나 서명 등을 모두 알파벳문자나 영어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 더구나 이것은 ICCP의 편목원칙 중에서 “한 개인저자의 인명이 여러 개의 낱말로 이루어졌으면, 표목어의 선택은 가능한 한 그 저자가 속해 있는 나라에서 통용되는 관례에 의해서 결정한다”²⁶⁾고 하는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미권의 이용자들에게도 유용성이 적을 것이다. 왜냐 하면 알파벳 이외의 다른 문자로 쓰여진 문헌은 이용자가 그 문자나 언어를 알지 못하면 그 문헌을 읽을 수가 없으므로, 표목에 쓰이는 언어도 그 원저자에 쓰여진 언어로 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서 발행되는 모든 문헌에 대한 목록의 서지기술사항이나 표목에 대한 기입문자는 우리 나라 사람을 위해서나 외국인을 위해서도 모두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유용하고 합리적이다. 그러나 저자명표목의 경우 배열의 기준이 되는 표목의 식별요소가 한글 인명만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술한바와 같이 OPAC에서의 검색시 문제가 있다. 특히 OPAC의 간략정보에 접근한 사용자들의 경우 동명이인을 구별할 수 없다.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저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색된 저자들의 상세정보를 하나 하나 다시 확인하여야만 되는 불편함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원칙이 없이 동명이인을 배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동명이인의 식별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한자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자인명의 한자는 식별상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동명이인의 1차 식별요소는 한자인명으로 하되, 표목인 한글인명과의 명확한 구별을 위하여 원괄호속에 묶어서 부기한다. 이러한 방법은 일본목록규칙, 중국편목규칙에서 적용시키고 있는 방식이다.

둘째, 1차 식별요소가 동일할 경우에는 2차 식별요소로 주제명을 부기하고, 2차 식별요소

24) AACR2R. 22.3C1

25) AACR2. 22.3C1

26) *LP Principles*. (Paris, October, 1961). Annotated ed. London : IFLA Committee on Cataloguing, 1971. p. xviii.

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3차 식별요소로 생몰년을 부기한다. 단 3차 식별요소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4차 식별요소로 한다.

셋째, 저자가 한글 이름(예를 들면, 한우리, 한솟별, 한초롱초롱 등)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글명 바로 다음에 주제명, 생몰년순으로 부기한다.

이상과 같은 식별요소를 부기하므로써 이용자들이 찾고자 하는 저자의 저작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저작들까지 동시에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3. 동명이인의 구별방안

AACR2R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편목규칙에서는 성명 다음에 그의 생몰년을 기입하여 동명이인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도 동명이인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 AACR2R에서는 다음의 예와 같이 생몰년 다음에 생년월일 까지 기입하고 있다.²⁷⁾ 이러한 이유는 표목의 배타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일명칭의 이서, 동명이인이나 단체명 등 혼동을 피하고 각각의 표목을 식별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Smith, John, 1900 Jan. 10-

Smith, John, 1900 Mar. 2-

또한 생몰년등이 미상일 경우는 AACR2R에서는 다음의 예와 같이 저자명 다음에 그의 지위 등을 표시하여 식별하고 있다.²⁸⁾

Brown, George, *Captain*

Brown, George, *F.I.P.S.*

Brown, George, *Rev.*

Valmer, *captaine*

Saur, Karl-Otto

Saur, Karl-Otto, *Jr.*

그러나 이상과 같은 방법은 목록을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동명이인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27) AACR2R. 22.17A.

28) AACR2R. 22.19B1

은 되지만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이용자들은 저작자들의 생몰년이나 저자의 사회적인 지위를 미리 알고 있을 가능성도 없으므로 그것이 이용자들의 식별요소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목록규칙에서는 다음의 예와 같이 저자명과 생몰년 다음에 저작자의 전공분야를 표시하고 있다.²⁹⁾

鈴木 清(1906-教育心理學者)

鈴木 清(1906-工藝家)

또한 KCR2에서는 “동성동명의 저자는 생몰년으로 구별한다. 만일 생몰년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생몰년만으로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曆朝名(국적), 직업, 世系 등을 원괄호로 묶어 부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4조).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예: 이, 순, ? - 755(新羅)

이, 순, ? - 1507 (朝鮮)

經國濟世內編註解, 李純 著.

스즈키, 신타로오, 1895 - (文學者)

스즈키, 신타로오, 1895- (畫家)

이상과 같이 저자명과 생년 다음에 저작자의 전공분야를 표시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도 저자명 다음에 먼저 전공분야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생몰년을 표시하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이용자들이 저자명을 통해서 문헌을 검색하는 경우는 그 저자가 어느 전공분야의 저술을 하는 사람이냐가 주요한 식별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용자가 하나의 문학작품을 찾으려고 저자명으로 접근했을 때, 그 저자명이 동명이인이 많이 있다면, 그 저자의 생몰년이나 그의 지위에 의해서 식별하기 보다는 문학작가라는 사실만 알면 그 저자를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작자의 전공분야마저도 동일하다면, 전공표시 다음에 생몰년을 표시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또한 AACR2R에서는 어떤 문구나 호칭으로 이루어진 인명의 경우 그 사람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타내지 못하면 다음과 같이 원괄호 속에 영어로 적절한 명칭(직업)을 추가하고 있

29) 日本圖書館協會目錄委員會編, 『日本目錄規則』. 1987年版 改訂版. 日本圖書館協會, 1994. (3.3.2.1.3 동명이인의 예 10)

다.³⁰⁾

River(*Writer*)

Taj Mahal(*Musician*)

이상에서 예시한 것은 어떤 문구나 호칭으로 이루어진 인명으로서 그에 대한 식별이 애매한 경우에 한한 것이지만, 특히 현대의 전문화시대에 있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동명이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과 이름이 분명한 경우라도, 성명 다음에 저작자의 전공주제명이나 특정한 직업명을 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중국편목규칙에서는 다음의 예와 같이 동명이인의 경우에는 저자명 다음에 그의 전공주제명을 원괄호 넣어 표시하고 있다.³¹⁾

林明德(文學)

林明德(史學)

이상과 같이 저자명 다음에 주제명을 기입하면 이 저자들은 동명이인임이 확실하므로 주제명 다음에 반드시 생몰연을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그들의 전공주제마저 동일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가능하면 생몰년도 표시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동명이인의 식별요소를 살펴본바 우리 나라에서의 동명이인의 구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나라의 인명사전 및 각종 사전류를 보면 인명 다음에 한자를 부기한 뒤에 생몰년을 부기하고 있다. 모든 사전류가 이 순차를 따르고 있음은 인명 식별의 관용이 그렇게 굳어져 있음을 입증한다. 한자 문화권에 있는 한.중.일 삼국에 있어서 한자인명의 한자는 로마자 사용국에 있어 서구인명의 spelling 이상으로 식별상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자로 쓰여진 동양인의 인명은 표목에 있어서 한글로 표기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한자를 원괄호속에 묶어서 2차 식별요소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사전류의 관용과도 일치되는 용법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형식이라고 판단된다.

예: 김영수 (金永秀)

김영수 (金永洙)

30) AACR2R. 22.11A.

31) 中國圖書館學會分類編目委員會, 『中國編目規則』. 修訂版. 中國圖書館學會. 民國 84(1995). p. 211 (22.31 中國人名)

둘째, 2차 식별요소인 한자까지 부기하여도 동명이인이 동일할 경우에는 3차 식별요소로 주제명을 부기한다.

예: 김영수(金榮秀) 정치학
김영수(金榮秀) 법학

이와 같이 주제명을 부기하므로써 검색시 정확률을 높여 주고 동일한 주제분야의 관련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셋째, 3차 식별요소까지 동일한 인명의 경우에는 4차 식별요소로 생몰년을 부기한다.

예: 김영수(金瑩洙) 국문학 1917-
김영수(金瑩洙) 국문학 1918-

넷째, 단 저자가 한글 이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명 다음에 바로 주제명을 부기하고 그 다음에 생몰년을 부기한다.

예: 한우리 수학 1952-
한우리 천문학 1957-

4. 주제명일람표의 작성방안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인명표목의 한글표기와 그 한자표기 다음에 주제명을 기입하자면, 인명표목 전반에 걸쳐서 주제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용하기 위한 정형화된 주제명일람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주제명일람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제명표목표', 즉 예를 들면; 미국 의회도서관의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LCSH)³²⁾ 나 우리 나라에서 이재철이 편찬한 '주제명표목표'³³⁾, 일본에서 편찬한 기본건명표목표 등과는 전혀 다르다.

이러한 주제명표목표는 목록에 있어서 주제명을 표목으로 할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가능한 한 세분된 전문주제명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인명 또는

32) Library of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16th ed. Washington, D.C. : Library of Congress, 1993. 4 vols.

33) 이재철, 『주제명표목표』. 서울 :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1961.

저자명이 표목이 되는 경우 다만 동명이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첫째 저자명의 한글표기, 둘째 그에 대한 한자표기, 셋째의 식별요소로서 그 저자가 속해있는 주제영역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주제명표목표'를 여기에 적용할 경우 오히려 동일한 저자의 저작이 분산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의 동명이인의 3차 식별요소인 주제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국십진분류법'(KDC4)³⁴⁾에 전개된 주제명 중에서 우선 제1차로 유(類)와 강(綱)에 전개된 주제명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단 KDC의 유와 강의 주제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목이나 혹은 세목에 전개된 항목 중에서 반듯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추가한 주제명일람표를 작성하여 사용한다.

첫째, 총류와 그 밑에 전개된 항목 중에서 백과사전, 강연집, 연설문집, 일반연속간행물, 일반 학회 단체 협회 기관, 신문, 언론, 일반 전집 총서, 향토자료 등은 주제명 또는 주제영역표시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제외한다. 그러므로 서지학, 문헌정보학, 저널리즘, 그리고 069에 전개된 박물관학을 추가한다.

둘째, 100 철학에서 전개된 항목 중에서; 철학의 체계는 주제명이 될 수 없고, 형이상학, 논리학 등은 철학일반에 포괄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여기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다만 철학, 경학, 동양철학, 서양철학, 심리학, 윤리학만을 택한다.

셋째, 200 종교는 종교 한 항목만으로도 동명이인을 식별하기 위한 셋째의 식별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불교와 기독교가 가장 큰 종교로서 이들은 주제명으로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들을 수용하고, 그 이하에서 전개된 종교는 모두 제외한다.

넷째, 300 사회과학은 포괄적인 주제로서 '사회과학'이라는 주제명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그 하위의 주제명을 모두 수용하되, 330에서 사회문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복지'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사회학'과 '사회복지' 두 가지 주제명을 수용한다. 또한 330에서는 '민속학', 390에서는 '군사학'만을 채택한다.

대섯째, 400 순수과학은 역시 포괄적인 주제로서 '순수과학'이라는 주제명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그 하위의 주제명을 모두 수용한다.

여섯째, 500 기술과학도 역시 포괄적인 주제로서 '기술과학'이라는 주제명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기타의 주제명은 모두 수용하되, 다만 580 '제조업'은 주제명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다. 한편 510 '의학'에서는 '한의학'을 추가하고, KDC에서는 조선공학, 항공공학, 우주공학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러한 주제들은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들을 추가한다. 또한 520에서는 '농업'은 주제명이 아니므로 '농학'만을 택하고, 530

34) 『韓國十進分類法』. 第4版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

에서는 '공학일반'으로 조정하며, 560에서는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을 별개의 것으로 수용하고, 590에서는 '가정학'만을 택한다.

일곱째, 600 예술은 역시 포괄적인 주제로서 '예술'이라는 주제명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기타의 주제명은 모두 수용하되, 630에서는 '공예'와 '장식미술'을 각각 별도의 주제로 채택한다. 690에서도 '오락'은 주제명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운동'은 '체육'으로 수정하여 채택한다.

여덟째, 700 언어는 모든 어학을 포괄하는 주제임으로 이를 제외하는 반면, 701에 전개된 '언어학'을 채택하고, 710에서 780까지 전개된 모든 언어를 수용한다. 또한 790 '기타제어' 이하에서 전개된 그리스어, 라틴어, 켈트어, 범어, 파리어, 이란어, 발트어, 러시아어 등을 더 추가한다.

아홉째, 800 문학은 모든 문학을 포괄하는 주제임으로 이를 제외하고, 810에서 880까지 전개된 각국의 문학을 모두 수용하는 한편, 890 '기타제문학'에서 전개된 그리스문학, 라틴문학, 켈트문학, 범문학, 파리문학, 이란문학, 발트문학, 러시아문학 등을 더 추가한다.

열째, 900 역사는 '역사'라는 주제명과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만을 수용하고, 기타의 지역사는 모두 제외한다. 한편 980 '지리'는 그대로 수용하고, 990 '전기'는 '전기'만을 전공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다.

이상과 같은 원칙 하에 주제항목을 설정하되, 주제명의 배열은 KDC의 배열순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 이유는 이 주제명일람표는 편목자가 사용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편목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배열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KDC의 배열순에 따라 전개하면 다음의 <표 3>와 같다.

<표 3> 주제명일람표

000(총 류)	400(순수과학)	600(예 술)	800(문 학)
서지학	수학	건축술	한국문학
문헌정보학	물리학	조각	중국문학
박물관학	화학	공예	일본문학
저널리즘	천문학	장식미술	영미문학
	지학	서예	독일문학
100(철 학)	광물학	회화	프랑스문학
철학	생명과학	사진술	스페인문학
동양철학	식물학	음악	이탈리아문학
서양철학	동물학	연극	그리스문학

경학		체육	라틴문학
심리학			켈트문학
윤리학		700(언어)	법문학
	500(기술과학)	한국어	파리문학
200(종교)	의학	중국어	이란문학
종교	한의학	일본어	발트문학
불교	농학	영어	러시아문학
기독교	공학일반	독일어	기타제문학
	건축공학	프랑스어	
300(사회과학)	기계공학	스페인어	
통계학	전기공학	이탈리아어	900(역사)
경제학	전자공학	그리스어	역사
사회학	화학공학	라틴어	한국사
사회복지	조선공학	켈트어	동양사
정치학	항공공학	범어	서양사
행정학	우주공학	파리어	지리
법학	가정학	이란어	
교육학		발트어	
민속학		러시아어	
군사학		언어학	

IV. 인명표목통제를 위한 전거레코드 작성방안

전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명표목에 있어서 첫째로 저자명을 한글로 표기하고, 둘째로 그에 대한 漢字人名을 기입하고, 셋째로 저자가 전공하는 주제명을 한글로 표시하자면, 한국의 모든 저작자에 대해서 일일이 '인명전거레코드'를 작성해야만 한다. 물론 목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인명표목을 하나 하나씩 작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작업이 중복되거나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므로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명표목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인명전거 레코드'를 작성하고, 만약 이

전거레코드에 누락된 인명 또는 새로운 인명이 출현하는 경우는 목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본 필자가 학위논문³⁵⁾에 제시한 인명표목의 작성방안을 활용하여 한국의 인명표목을 위한 인명전거레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하나의 잠정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전항에서 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CD-ROM목록에서 인명표목으로 간략정보에 접근하여 '김영수'라는 인명표목 하에서 검색한 209건의 간략정보 중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른 한자로 쓰여진 저자명을 선별하고, 그에 대한 목록의 상세정보를 근거로 해서 전공분야를 조사한 다음, 이를 앞에서 제시한 '주제명일람표'에 따라 각각 해당하는 주제명을 기입한바 그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김영수에 대한 한자인명과 각자의 주제명표

김영수 :	
김영수 (金永秀) 국문학	김영수 (金瑛秀) 수학
김영수 (金永秀) 수학	김영수 (金瑛洙) 행정
김영수 (金永洙) 건축공학	김영수 (金泳洙) 디자인
김영수 (金永洙) 국문학	김영수 (金榮秀) 국문학
김영수 (金永洙) 영어	김영수 (金榮秀) 법학
김영수 (金永洙) 예술	김영수 (金榮秀) 영어
김영수 (金永洙) 국문학	김영수 (金榮洙) 윤리
김영수 (金永壽) 국문학	김영수 (金榮洙) 식품학
김영수 (金英洙) 윤리	김영수 (金瑩洙) 동양고전
김영수 (金英洙) 치과	김영수 (金瑩洙) 국문학
김영수 (金英洙) 회계	김영수 (金瑩洙) 심리

이상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의 인명을 한글로 표기하면 모두 동일한 인명인데 이들을 각각 한자로 쓴 이름은 동음이명(同音異名)이거나 혹은 동명이인이다. 이들 중에서 우선 金永秀는 두사람이 동음이인으로서 한사람은 국문학, 한사람은 수학이 전공이다. 둘째로 金永洙는 네사람이 동명이인데 각각 건축학, 국문학, 영어, 예술을 전공하는 사람이다.

35) 정옥경. 한국편목규칙의 표목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 1999. pp.100-105.

셋째로 金英洙는 세사람이 동명이인인데 한사람은 윤리, 한사람은 치과의학, 또 한사람은 회계학이 전공이다. 넷째로 金榮秀는 세사람이 동명이인인데 각각 문학, 법학, 영어학이 전공이다. 다섯째로 金瑩洙는 두사람이 동명이인데 각각 문학, 심리학이 그들의 전공이다.

한편 '김영수'라는 인명표목 하에서 검색된 저자표시난에 한글로만 표기된 인명도 38명이나 나타났다. 그리하여 이들에 대한 한자인명의 경우와 같이 이들 각각에 대한 목록의 상세 정보를 근거로 해서 전공분야를 조사한 다음, 이를 앞에서 제시한 '주제명표'에 따라 각각 해당하는 주제명을 기입한바 그 결과는 다음의 <표 5>과 같다.

<표 5> 김영수에 대한 한글인명과 각자의 주제명표

김영수 건축	김영수 심리
김영수 동양고전	김영수 영어
김영수 교육	김영수 역사
김영수 국문학	김영수 윤리
김영수 사진	김영수 정치
김영수 사회	김영수 종교
김영수 생물	김영수 회계
김영수 세법	

이상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글로만 표기된 '김영수'도 전공이 각각 다른 사람이 15명이나 된다.

이상의 <표 5>의 경우에는 이들의 한자인명이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을 뿐이지 앞에서 제시한 한자인명과 대부분 중복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한글인명은 동음이명이나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한글만으로 표기된 인명은 가능한 한 그 한자명과 생몰년을 찾아서 기입해야만 한다.

이상의 두가지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전공분야가 다른 12명 이상의 동음이명과 동명이인이 서로 혼합되어 배열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인명을 다만 한글의 가나다순으로만 배열하고, 그 다음은 서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저자명을 통하여 간략정보를 검색했을 때 동일저자의 저작이 일정한 순서로 나타나 있지 않고, 모두 서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문헌에 대한 상세정보를 검색하자면 동음이명이나 동명이인의 그 많은 저작들을 일일이 찾아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인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더구나 앞으로 축적되는 문헌의 양이 많으면 많아

질수록 검색의 효율성은 점차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국의 인명에 대해서는 정확한 전거레코드를 작성해야만 한다.

한국의 인명전거레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은 우선 각각의 저작자에 대해서 한글로 표기된 저자명, 한자인명, 저작자의 전공주제명(원괄호 속에), 생물연 순으로 기입하되 이들 각 사항은 한자씩 사이를 띄워둔다. 한자인명을 알 수 없는 저작자에 대해서는 한자인명의 자리를 비워둔다. 이에 대한 실예를 들면 다음의 <표 6>와 같다.

<표 6> 한국저자명전거 데이터베이스 작성법의 예시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金永秀) 국문학 1933-	김영수 (金瑛秀) 수학
김영수 (金永秀) 수학	김영수 (金瑛洙) 행정 1959-
김영수 (金永洙) 건축공학	김영수 (金泳洙) 디자인
김영수 (金永洙) 국문학	김영수 (金榮秀) 정치 1942-
김영수 (金永洙) 영어	김영수 (金榮秀) 법학 1940-
김영수 (金永洙) 회화 1918-	김영수 (金榮秀) 영어
김영수 (金永洙) 국문학 1941-	김영수 (金榮洙) 윤리 1935-
김영수 (金永壽) 국문학 1911-79	김영수 (金榮洙) 식품학
김영수 (金英洙) 윤리	김영수 (金瑩洙) 동양고전 1917-
김영수 (金英洙) 치과 1938-	김영수 (金瑩洙) 국문학
김영수 (金英洙) 회계	김영수 (金瑩洙) 심리

이상에서 제시한 ‘저자명전거레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 저작자체에 나타나 있는 저작자에 대한 주요한 정보와 「韓國人名大事典」³⁶⁾, 「現代韓國人名事典」³⁷⁾, 근간의 「한국인명록」, 각 언론사의 인물정보DB 등을 근거로 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할 것이다.

36) 『韓國人名大事典』, 서울: 學園社, 1967. 1390 p. (古代부터 1966년말 이전에 작고한 11,000명의 인명 수록)

37) 『現代韓國人名事典: 合同年鑑의 별책』, (1967년 이후 연간으로 간행 약 3,500명 수록)

V. 결 론

표목의 통제를 위한 레코드의 작성지침은 별도로 편찬하지 않고, 표목부의 규칙에 통합하여 편찬하는 것이 유용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통일된 표목 즉 접근점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표목의 선정 및 그 형식을 규정하는 편목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인명표목의 작성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의 인명표목은 모두 한글표기 다음에 한자인명을 기입하고 한자코드순으로 다시 체계적으로 배열해야만 각각의 저자명이 개별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별화된 한자로 쓰인 인명도 동명이인이 상당히 많으므로, 이러한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한자명 다음에 주제명을 부기하고, 주제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생몰년을 부기하여 구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

AACR2R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편목규칙에서는 성명 다음에 그의 생몰년을 기입하거나, 생몰년 다음에 생월일 까지 기입하거나, 생몰년 다음에 저자의 전공분야를 표시하거나, 저자의 지위 등을 표시하거나, 적절한 명칭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편목자의 입장에서는 저자의 생몰년월일이나 지위 등이 동명이인을 구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일반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저자의 생몰년월이나 사회적 지위 등은 그들의 식별요소가 될 수 없고, 다만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 또는 전공분야와 부합되느냐가 주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작자의 성과 이름이 분명한 경우라도, 성명 다음에 저작자의 전공주제명을 표시하고, 동명이인으로서 전공주제도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그 다음에 생몰년을 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전공주제명을 표시하기 위한 정형화된 합리적인 주제명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제명일람표에 의하여 일관성이 있는 주제명을 표시하여 동일인의 저작이 한곳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인명전거레코드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되므로서 표목통제가 되고 그것이 서지기술 데이터와 손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목록정보 = Korean MARC on DISC』. 1997. 가을판.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97.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전거통제용』.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99.
- 오동근. “典據레코드의 작성에 관한 研究: 특히 GARE의 韓國的 適用과 관련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7집(1994. 12). pp. 75-97
- 오동근. “한국형 전거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4호(2000. 12). pp.21-47.
- 日本圖書館協會目錄委員會 編. 『日本目錄規則 : 1987년판 개정판』. 동경 : 일본도서관협회, 1994.
- 이치주·이재선. “KORMARC를 활용한 저자명전거통제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서관》 제56권, 제1호(2001. 3). pp. 128-155.
- 정옥경. 한국편목규칙의 표목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 1999.
- 中國圖書館學會分類編目委員會. 『中國編目規則』. 수정판. 臺北 : 中國圖書館學會, 民國84(1995).
- 崔德教, 李勝羽 編著. 『韓國姓氏大觀』. 서울 : 創造社, 1971.
-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 修訂版.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66.
- 한국도서관협회 편. 『韓國目錄規則, 3판: 記述·標目올림指示編』.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83.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nd ed. Chicago : ALA, 1978.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nd. ed. Revised. Chicago : ALA, 1988.
- Gorman, Michael. "After AACR2R: the Future of the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In: *The Origins, Content, and Future of AACR2 Revised*. ed, by Richard P. Smiraglia. Chicago : ALA, 1992. pp. 89-94.
- Greever, Karen E. "A Comparison of Pre and Post-Cataloging Authority Control",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41(Jan. 1997). pp. 39-49.
- Holley, Robert P. "IFLA and International Standard in the Area of Bibliographic Control",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 21(Mar./Apr.4, 1996). pp. 17-35.
- IFLA. *Guidelines for Authority and Reference Entries*. IFLA International Programme for UBC. 1984.
- IFLA. *UNIMARC/Authorities : Universal format for authorities*. London : K.G. Saur. 1991.

- IFLA. *Statement of Principles: Adop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ing Principles. Paris, Oct., 1961*. Annotated edition with commentary and examples by Eva Verona. London : IFLA Committee on Cataloguing, 1971.
- IFLA. *Names of Persons: National Usages for Entry in Catalogues*. 3rd ed. London :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 pp. 1-193.
- Olson, Nancy B. *Cataloging Internet Resources: a Manual and Practical Guide*. 2nd ed. 1998. (<http://www.oclc.org/oclc/man/9256cat/chap4.htm>)
- Ruschoff, Carlen. "Changes to Part II, Headings, Uniform Titles and References". In: *The Origins, Content, and Future of AACR2 Revised ed.*, by Reichard P. Smiraglia. Chicago : ALA, 1992. pp. 78-88.
- Smiraglia, Reichard P. *The Origins, Content, and Future of AACR2 Revised ed.* Chicago : ALA, 1992.
- Tillett, Barbara B. "Considerations for Authority Control in the Online Environment". In: *Authority Control in the Online Environment: Considerations and Practices*. ed. by Barbara B. Tillett. New York, Haworth Press, 1989. pp. 1-12.
- Tucker, Ben R. "Interpretation of 1988 Revision". In: *The Origins, Content, and Future of AACR2 Revised ed.*, by Reichard P. Smiraglia. Chicago : ALA, 1992. pp. 39-42.
- Wajenberg, Arnold S. "The Future of Cataloging Standards", *Illinois Libraries*, Vol. 72, No. 6(1990). pp. 494-497.